

충청북도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안

# 심 사 보 고

'04. 9. 20(월)  
기획행정위원회

## 1. 심사 경과

제출자 : 충청북도지사

제출 및 회부일자

○ 제출일자 : 2004년 9월 4일

○ 회부일자 : 2004년 9월 6일

상정일자 : 제231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

○ 2004. 9. 15 :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,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,  
삼의의결

## 2. 제안설명 요지

(제안설명자 : 기획관리실장 이 종 배)

제안이유

○ 지방재정법 제14조 및 동법시행령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충청북도가 사회단체에 지원하는 보조금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행정자치부 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 표준안에 의거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.

## □ 주요골자

- 보조금의 지원은 사업비의 지원을 원칙으로 하며, 필요한 경우 운영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음(안 제5조)
- 사회단체에서 제출한 보조금 신청서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 여부 및 지원액을 결정하고 사회단체장에게 통보(안 제8조 및 제9조)
- 위원회는 위원장,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5인 이내로 구성하되, 위촉직을 과반수가 되도록함(안 제10조)
- 보조금을 교부받은 단체는 사업 종료시 사업비 정산, 자체 평가 내용이 포함된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, 도지사는 매년 사업 평가를 실시하고 다음 년도의 보조금 지원에 반영(안 제17조)

## 3. 검토보고 요지

### (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이상 만)

- 충청북도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안은 지방재정법 제1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충청북도가 지원하는 보조금중 사회단체에 지원하는 보조금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행정자치부의 표준안에 의거 제정하는 조례로
-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은 그동안 행정자치부의 “지방자치단체 예산 편성기본지침”에 따라 지원하던 것으로 2003년도까지는 13개 정액 보조단체와 임의보조단체로 구별하여 지원하였으나,

- 13개 단체만 정액기준을 운영함으로써 시민단체등에서 임의보조 단체와의 형평성 문제 제기와 매년 많은 사회단체가 정액보조단체로 추가지정을 요구하여
- 2004년도에는 정액보조단체별 상한기준을 폐지하고 정액보조단체와 임의보조단체를 묶어서 자치단체별 사회단체보조금 상한제(ceiling)를 도입하여 지원하여 왔음.
- 따라서 동 조례안은 지금까지 행정자치부의 지침에 따라 지원하던 사회단체 보조금을 조례로 정함으로써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을 자치단체에서 자율 결정하고 합리적 재원배분을 위하여 충청북도사회단체보조금지원심의위원회를 구성·운영함으로써 보조금 지원의 형평성, 공정성,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됨.
- 다만, 제16조의 실비변상에 대해서는 “공무원은 직접 자기 소관업무 이외의 위원으로 위촉되어 회의에 출석한 경우에 한하여 지급한다” 라고 지난 6월 11일 충청북도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(조례 제2805호)가 개정되었으므로 이에 대한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하며
- 제8조에 “도지사는 보조금신청서가 접수된 경우에는 이를 검토 조정후 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의한다.”라고 하였던 바 조정하는 내용이 무엇이고, 위원회의 기능과는 어떻게 구별되는지와 위원회는 안건의 가부결정이나 수정·권고에 그치는지 또는 결정된 사안에 대한 구속력은 있는지 등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이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.

#### 4. 질의 및 답변요지 : “생략”

## 5. 토론 요지 : “생 략”

## 6. 수정안 요지

### □ 수정이유

- 충청북도사회단체보조금지원심의위원회의 부위원장을 2인으로 하면서 그 중 1명은 위촉직 위원중에서 호선하고, 보조금 신청 단체에 가입한 자는 위원이 될 수 없도록 하는 등 위원회 운영의 객관성과 투명성 제고
- 관련조례와 상충하는 조문과 조례안중 일부 불확실한 표현을 명확 하고 이해하기 쉽게 수정하고자 함.

### □ 수정 주요골자

- 보조금 지원대상 사업을 구체적으로 표현(안제4조제2호)
  - 충청북도가 권장하는 사업 → 충청북도의 발전과 도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권장하는 사업
- 부위원장 1인(기획관리실장)을 2인으로 하고 1인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토록 함(안제10조제2항 신설)
- 사회단체보조금 신청단체에 가입한 자는 위원이 될 수 없도록 함. (안 제10조 제2항 단서조항 신설)
- 충청북도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와 상충되는 조문 수정
  -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→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
  - ※ 충청북도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 제3조(수당) ①.....다만, 공무원은 직접 자기 소관업무 이외의 위원으로 위촉되어 회의에 출석한 경우에 한하여 지급한다.

7. 심사결과 : "수정안 가결"

8. 소수의견 요지 : "없 음"

9. 기타 필요한 사항 : "없 음"

10. 심사보고서 첨부서류

- 충청북도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- 충청북도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안

# 충청북도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안에대한수정안

제안년월일 : 2004. 9. 20.  
제안자 : 기획행정위원장

## 1. 수정이유

- 충청북도사회단체보조금지원심의위원회의 부위원장을 2인으로 하면서 그 중 1명은 위촉직 위원중에서 호선하고, 보조금 신청단체에 가입한 자는 위원이 될 수 없도록 하는 등 위원회 운영의 객관성과 투명성 제고
- 관련조례와 상충되는 조문과 조례안중 일부 불확실한 표현을 명확하고 이해하기 쉽게 수정하고자 함.

## 2. 수정 주요내용

- 보조금 지원대상 사업을 구체적으로 표현(안제4조제2호)
  - 충청북도가 권장하는 사업 → 충청북도의 발전과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권장하는 사업
- 부위원장 1인(기획관리실장)을 2인으로 하고 1인은 위촉직 위원중에서 호선토록 함(안제10조제2항 신설)
- 사회단체보조금 신청단체에 가입한 자는 위원이 될 수 없도록 함.  
(안 제10조 제2항 단서조항 신설)
- 충청북도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와 상충되는 조문 수정
  -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→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
  - ※ 충청북도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 제3조(수당) ①.....다만, 공무원은 직접 자기 소관업무 이외의 위원으로 위촉되어 회의에 출석한 경우에만 하여 지급한다.

# 충청북도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안에대한수정안

충청북도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안중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안 제1조중 "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"를 "규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"로 한다.

안 제4조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2. 충청북도의 발전과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권장하는 사업으로서 보조금을 지원하지 아니하던 그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

안 제6조중 “보조금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도보, 충청북도홈페이지 등에”를 “보조금 지원계획을 충청북도홈페이지 및 도보 등에”로 한다.

안 제7조중 “규정에 따라 도지사가 수립한”을 삭제한다.

안 제8조중 “검토 조정한 후”를 “검토한 후”로 한다.

안 제9조중 “지원 여부 및”을 삭제한다.

안 제10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- ①제8조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2인을 포함하여 15인이내로 구성하되, 위촉직 위원이 과반수가 되도록 한다.

안 제10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②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며, 부위원장 1인은 기획관리실장이 되고, 1인은 위촉직 위원중에서 호선한다.

안 제10조제2항은 제3항으로 하며, 제2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단, 사회단체 보조금 신청단체에 가입한 자는 제외한다.

안 제10조제3항은 제4항으로 하고, 제4항은 제5항으로 한다.

안 제12조제3항을 삭제한다.

안 제16조중 “공무원이 아닌”을 삭제한다.

안 제17조제2항중 “사회단체 보조금 운영 및 지원에”을 “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중단 또는 축소 등 운영에”로 한다.





제 정 안	수 정 안
<p>제9조(결과통보) 도지사는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회단체별 보조금지원 여부 및 지원액을 결정하고, 이를 당해 사회단체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</p>	<p>제9조(결과통보) .....                  .....                  .....(삭제).....                  .....                  .....</p>
<p>제10조(위원회 구성) ①제8조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로 구성하되, 위촉직 위원이 과반수가 되도록 하고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며, 부위원장은 기획관리실장이 된다.</p>	<p>제10조(위원회 구성) ①제8조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2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로 구성하되, 위촉직 위원이 과반수가 되도록 한다.</p>
<p>&lt;신설&gt;_                  _                  _</p>	<p>②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며, 부위원장 1인은 기획관리실장이 되고, 1인은 위촉직 위원중에서 호선한다.</p>
<p>② (생략)_                  1. (생략)                  2. 위촉직 위원 : 도의회의원, 민간전문가, 대학교수 등 사회단체에 대하여 전문적 식견과 덕망을 갖춘 자                  _                  _</p>	<p>③ (제정안과 같음)                  1. (제정안과 같음)                  2. ....                  .....                  .....                  단, 사회단체보조금 신청단체에 가입한 자는 제외한다.</p>
<p>③ (생략)                  ④ (생략)</p>	<p>④ (제정안과 같음)                  ⑤ (제정안과 같음)</p>

제 정 안	수 정 안
<p>제12조(회의 운영) .....</p> <p><u>③위원회의 심의안건과 관련이 있는 위촉직 위원은 당해 안건의 심의·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.</u></p>	<p>제12조(회의 운영) .....</p> <p><u>(삭제)</u></p> <p>-</p> <p>-</p>
<p>제16조(실비보상)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충청북도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.</p>	<p>제16조(실비보상) .....</p> <p>.....(삭제).....</p> <p>.....</p> <p>.....</p> <p>.....</p>
<p>제17조(보고 등) ②도지사는 매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고, 그 결과를 다음 연도의 사회단체보조금 운영 및 지원에 반영하여야 한다.</p>	<p>제17조(보고 등) ②.....</p> <p>.....</p> <p>.....</p> <p>.....<u>지원중단 또는 축소 등 운영에</u>.....</p> <p>.....</p>

## 충청북도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안

**제1조(목적)**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14조 및 동법시행령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충청북도가 사회단체에 지원하는 보조금(이하 “보조금”이라 한다)의 효율적인 운영·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.

**제2조(정의)** 이 조례에 있어서 “사회단체”라 함은 영리가 아닌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주 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관계 법령에 의하여 등록된 단체를 말한다.

**제3조(다른 법령 및 조례와의 관계)** 사회단체보조금의 운영·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.

**제4조(지원대상)** 충청북도지사(이하“도지사”라 한다)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사회단체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.

1. 법령 또는 조례에 지원규정이 있는 경우
2. 충청북도의 발전과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권장하는 사업으로서 보조금을 지원하지 아니하면 그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

**제5조(지원범위)**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원은 사업비의 지원을 원칙으로 한다. 다만, 법령 및 조례에 운영비 지원규정이 있거나 사회단체의 특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운영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.

**제6조(지원계획의 수립 및 공고)** 도지사는 매년 사회단체보조금의 지원대상, 지원규모 및 지원절차 등을 포함하는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계획을 충청북도홈페이지 및 도보 등에 공고 하여야 한다.

**제7조(신청 및 접수)** ①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사회단체의 장은 제6조의 사회단체보조금지원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회단체 보조금지원 신청서를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②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신청서를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접수하여야 하며, 필요한 경우 보조금지원을 신청한 사회단체의 장에게 서류보완 등을 요청할 수 있다.

**제8조(심의)** 도지사는 제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보조금신청서가 접수된 경우에는 이를 검토한 후 충청북도사회단체보조금지원 심의위원회(이하 "위원회"라 한다)에 회부하여 심의 한다.

**제9조(결과통보)** 도지사는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회단체별 보조금 지원액을 결정하고, 이를 당해 사회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

**제10조(위원회 구성)** ①제8조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는 위원장1인과 부위원장 2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로 구성하되, 위촉직 위원이 과반수가 되도록 한다.

②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며, 부위원장 1인은 기획관리실장이 되고, 1인은 위촉직 위원중에서 호선한다.

③위원은 다음 각호의 1과 같이 한다.

1. 당연직 위원 : 자치행정국장, 복지환경국장, 문화관광국장, 여성정책관
2. 위촉직 위원 : 도의회의원, 민간전문가, 대학교수 등 사회단체에 단체에 대하여 전문적 식견과 덕망을 갖춘 자. 단, 사회단체 보조금 신청단체에 가입한 자는 제외한다.

④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당해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하고,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

⑤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, 간사는 예산담당관이 된다.

**제11조(위원회 기능)**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
1. 사회단체가 제출한 사업계획 및 예산 지원에 관한 사항
2. 사회단체보조금 운영 및 실적평가에 관한 사항
3.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에 부의하는 사항

**제12조(회의 운영)** ①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, 그 의장이 된다.

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 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**제13조(분과위원회)** ①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.

②분과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.

**제14조(의견청취 등)**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는 심의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 및 사회단체 관계자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설명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.

**제15조(회의록)** 위원회는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.

**제16조(실비보상)**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충청북도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.

**제17조(보고 등)** ①보조금을 교부받은 사회단체의 장은 사업 종료시 사업추진실적, 사업비정산, 자체평가내용 및 기타 도지사가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.

②도지사는 매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고, 그 결과를 다음 연도의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중단 또는 축소 등 운영에 반영하여야 한다.

**제18조(별도계정)** 보조금을 교부받은 사회단체의 장은 그 교부받은 보조금에 대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고, 수입 및 지출을 명백히 구분하여 계리하여야 한다.

**제19조(준용)**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외에 사회단체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충청북도보조금관리조례 및 충청북도재무회계규칙의 관계규정을 준용한다.

## 부 칙

①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②(경과규정) 제6조 이하 보조금의 신청·운영·관리에 관한 규정은 2005 회계연도부터 적용한다.

# 관계법령 발췌

## □ 지방재정법

**제14조(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)** ①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 또는 공공기관이 아닌 단체에 기부·보조 또는 기타 공금의 지출을 할 수 없다.

1.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
  2. 국고보조재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
  3. 용도를 지정한 기부금에 의한 경우
  4.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
-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## □ 지방재정법시행령

**제24조(공공기관의 범위등)** ①법 제14조에서 “공공기관”이라 함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권장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 또는 단체로서 그 목적과 설립이 법령 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기관을 말한다.

②법 제14조제1항제14호에서 “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”라 함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그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으로서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그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.

③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등에 대한 교부신청, 교부결정 및 사용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